

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규정

제정 : 2007년 4월 27일(이사회)

개정 : 2010년 8월 26일(이사회)

개정 : 2014년 1월 24일(이사회)

개정 : 2015년 3월 27일(이사회)

개정 : 2017년 3월 24일(이사회)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ISO 18436에 의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에 관한 기술자의 자격 인증을 목적으로 설치된 인증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명칭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(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, KCIMD) (이하 설비진단인증원이라 한다.)이라 한다.

제 3 조 (활동) 설비진단인증원은 제 1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기계 상태 감시 및 진단 기술자의 자격인증
2. 훈련 기관의 인정
3. 인증·인정 제도의 품질 관리
4. 기타 제 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4 조 (임직원의 구성) ① 설비진단인증원의 임원은 원장1명, 부원장 1명, 운영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 ② 설비진단인증원은 행정 및 사무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책임자 1명 및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 ③ 제 8조에서 정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 ④ 단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증원할 수 있다.

제 5 조 (임직원의 임명) ① 원장은 (사)한국소음진동공학회 (이하 학회라 한다.)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 ② 부원장 및 운영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. ③ 사무책임자 및 직원은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원장이 임명한다.

제 6 조 (임직원의 직무) ① 원장은 설비진단인증원을 대표하고, 설비진단인증원의 업무를 총괄 한다.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설비진단인증원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 ③ 사무책임자는 원장 및 부원장의 지시에 따라 설비진단인증원 업무를 수행한다.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비진단인증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7 조 (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속 위원회와 위원의 임명 및 임기) ① 설비진단인증원은 제 3조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,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품질및공평성관리위원회
2. 훈련기관승인위원회
3. 진동기술자자격인증위원회
4. 트라이볼로지기술자자격인증위원회
5. 열화상기술자자격인증위원회
6. 기타 설비진단인증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

② 위원회에는 위원장, 간사 및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.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고,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. ④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9 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원장, 부원장, 각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, 사무책임자로 하며, 사무 간사가 동석하여 자료준비 및 회의기록을 할 수 있다.

② 원장이 필요로 할 경우,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운영위원회의 기능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
2.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3. 각종 규정의 제정 및 변경
4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5. 이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11 조 (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) ① 운영위원회 개최의 정족수는 운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 ② 심의 사항의 채택 여부는 서면 혹은 거수에 의한 것으로 한다. ③ 모든 경우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 ④ 운영위원회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, 심의 사항은 후일 서면 투표에서 정식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12 조 (훈련기관의 인정) ① 훈련기관승인위원회는 훈련기관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 ② 운영위원회는 보고된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,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다. ③ 원장은 승인서를 발생하고, 그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 13 조 (자격의 인증) ① 기술자자격인증위원회는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 ② 운영위원회는 보고된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,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다. ③ 원장은 인증서를 발행하고, 그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 14 조 (재정) ① 설비진단인증원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인증 및 인정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
2. 기부금 또는 보조금
3.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
4. 기타의 수입

② 독립 채산을 달성하기 위해 보급을 위한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기획실시할 수 있다.

제 15 조 (회계연도) 설비진단인증원의 회계 연도는 학회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
제 16 조 (세입, 세출 예산) 설비진단인증원의 세입,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 17 조 (위원의 윤리) ① 인증 및 인정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설비진단인증원에서 정한 윤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. ②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 18 조 (규정의 개정·폐지) 이 규정의 개정·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하고,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9 조 (시행 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2.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